

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의 번 호	335
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체육시설업 인·허가와 관련한 기부금품모집금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.
-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 「도내에서 등록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기탁한 성금」 규정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령 및 정부의 준조세제도 폐지방침에 위배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첨 부

1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(안) 1부.

2 체육시설업 인·허가와 관련한 기부금품모집금지 지시공문 1부

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(충청북도조례제1914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